

문서번호	BSKS-2-1-11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1/6

1992.03.01. 제정

2012.01.02. 개정

2016.01.02. 전면개정

2016.07.01. 개정

2016.12.15. 개정

2019.07.16. 개정

2020.09.25. 개정

2022.04.15. 개정

2022.11.24.개정

소관부서 : 사무처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장학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상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- ① '신입생'은 신입학 예정자 또는 입학한 학생을 뜻한다.
- ② '재학생'은 본 대학에 등록하여 재학중인 학생을 뜻한다.
- ③ '교내장학금'은 본 대학 교비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뜻한다.
- ④ '교외장학금'은 외부에서 지원받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뜻한다.
- ⑤ '등록금'은 해당학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을 뜻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본 대학의 교내·외 장학금 지급과 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장학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20.09.25., 2022.11.24.>

- ① 교내장학금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장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.
- ② 교외장학금은 기탁기관 또는 수탁받은 학과 또는 장학업무 부서에서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장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. <개정 2020.09.25,,2022.11.24.>
- ③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측 지급지침, BSKS-2-1-25(국가장학금 규정), BSKS-2-1-26(국가장학금 시행세칙)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
제4조 (장학생 선발) 다음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.

- 1. [별표1]의 장학금 수혜대상에 해당되는 자
- 2. 장학금 지급심의 당시 본 대학에 재학중인 자
- 3.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인 자
- 4. 재학 중 징계를 받지 않은 자
- 5. 증빙서류 제출 및 추천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필한 자



문서번호	BSKS-2-1-11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2/6

제5조 (장학금의 지급제한) ① 교내장학금의 중복지급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2종 이상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경우 금액이 큰 장학금 1종을 지급한다. 단,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할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지급할 수 있다.

- 1. [별표1]의 신입생장학금 1종과 재학생장학금 1종은 중복지급할 수 있다.
- 2. [별표1]의 재학생장학금은 1개학기 중 최대 2종 중복지급할 수 있다.
- 3. 위 '2'호의 내용 중 교육자자녀장학금과 공무원장학금은 타 교내장학금과 중복지급할 수 없다.
 - 4. 등록금 범위외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지급할 수 있다.
 - 5. [별표1]의 신입생장학금 중 연계장학금과 만학도장학금은 중복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성적충족기준이 있는 장학금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생자격을 상실한다.

제6조 (장학금의 지급중지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박탈하거나 장학금을 반환시킬 수 있다.

- 1. 휴학 및 제적 등 학적변동으로 해당학기 재학생이 아닌 자
- 2. 학업성적 및 학업태도가 불량한 자
- 3.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
- 4.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5. 장학금 수혜자격이 되는 임무를 사퇴한 자
- 6. 기타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 자

제7조 (수혜기간 및 조건) 장학생 자격을 매 학기 확인하여 학기별로 지급한다. 단, 근로장학금은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장학금액의 조정)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때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명시된 교내장학금을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근로장학생 관리)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장학업무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로하여야 하며, 근로장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09.25,2022.11.24.>

제10조 (장학금 종류별 지급범위 및 비율) ① 교내장학금의 장학종별 지급범위 및 비율은 [별표1]과 같다.

② 본 조에 규정된 장학금 종류 이외의 새로운 장학금의 신설이 필요할 시에는 장학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11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3/6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2.1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9.5.1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사무처』로 이관하고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11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4/6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11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5/6

[별표1] 교내장학생 선발 및 지급<개정 2019.7.16.,2022.11.24.>

				ca-	
구 분	장 학 금 명	수 혜 자 격	지 급 금 액	등록금 범위 준수여부	계속 지급 기준
	특별장학금	학과별 특기장학생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자	매학기 등록금 100%		직전학기 평점 3.7이상
	KS 지역 인재장학금(1)	출신고교에서 「KS 지역 인재장학금」 대상으로 추천받고	1년간 등록금 100%		학과내 성적
	KS 지역 인재장학금(2)	소속학과에서 최종 선발된 자	매학기 등록금 100%		상위50%이내
	검정고시장학 금	검정고시출신 합격자 중 대학자체 예비대학 특강 프로그램 수료자	입학학기 수업료 20%		해당사항 없음
	내신성적우수 장학금	고교내신과목 50%이상 1등급 이내	매학기 수업료 100%		
	(1~3학년 전체	고교내신과목 50%이상 2등급 이내	1년간 수업료 100%		직전학기 평점 3.7이상
	내신성적 반영)	고교내신과목 50%이상 3등급 이내	1년간 수업료 50%		0.1 0
		수능 2과목이상 1등급 이내	매학기 등록금 100%		
	수능성적우수	수능 2과목이상 2등급 이내	매학기 수업료 100%		직전학기 평점
	장학금	수능 2과목이상 3등급 이내	매학기 수업료 50%	등록금 범위내	3.7이상
		수능 2과목이상 4등급 이내	1년간 수업료 50%		
	단일반구성 장학금	연계 및 협약에 따라 특별반 (20명이상) 구성시 구성원	매학기 수업료의 30%		
신입 생 장학	정원외 대졸자 장학금	정원외 대졸 출신자	매학기 수업료의 30%		
금	만학도장학금	입학당시 만25세 이상인 자	매학기 수업료의 30%		
	방통고장학금	방송통신고 출신자	입학금 100%, 매학기 수업료의 30%		
	산학협동 장학금	산업체위탁 지원자	매학기 수업료의 50%		해당사항 없음
	전공심화 장학금	전공심화 입학자	입학금 100%, 매학기 수업료의 30%		
	비교과장학금	비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자	입학금 전액		
	대학주관 콘테스트 특별장학금	본 대학 주최 고교생 대상 콘테스트 입상자	1등 : 매학기 등록금 100% 2등 : 입학학기 등록금 100% 3등 : 입학금 100%		
	연계장학금	연계 및 자매고교 당해연도 졸업자 중 고교의 추천을 받은 자	입학금 100%		
	농어촌장학금	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가능한 자 본인 또는 부모가 영농업중사자 (농업인 확인서 제출기능한 자)	입학학기 수업료 1,000,000원		
	교직원가족 장학금	학교법인 화신학원 산하 교직원 가족 또는 본인	매학기 등록금 100%		직전학기 평점 2.0 이상
	국가대표 상비군장학금	본인이 국가대표 상비군인 자	별도 책정 후 정액지급		해당사항 없음
	성인학습자전 담 장학금	성인학습자전담전형 입학자	매학기 수업료 50%		해당사항 없음
	편입생 장학금	편입으로 입학 한 자	입학학기 등록금 100% 감면		해당사항없음



문서번호	BSKS-2-1-11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6/6

구 분	장 학 금 명	수 혜 자 격	지 급 금 액	등록금 범위 준수여부	계속 지급 기준
	국가유공자 장학금	국가유공자 본인(배우자) 및 손·자녀	매학기 등록금 100%	등록 범위내	실점 7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
	북한이탈주민 장학금	북한이탈자	매학기 등록금 100%		직전 2개학기 평균 실점 70점 이상
	성적우수 장학금	직전학기 성적 우수 학생	수업료 기준 지급 [1급(80%),		해당사항 없음
			2급(50%)3급(30%), 4급(15%)		911 0 11 0 11 12
	교육자자녀 장학금	보호자가 교직에 재직중인 학생	수업료의 15%		직전학기 3.0이상
	공무원 장학금	학생본인이 공무원(정규반)	수업료의 30%		해당 없음
	가족장학금	가족(동거여부 무관) 2인 이상 재학	수업료 기준 지급 4급:15%		직전학기 3.0이상
	KS장학금	기초생활수급권자	수업료의 30%		직전학기 2.0이상
재학생	장애학생 장학금	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	수업료의 30%		직전학기 2.0이상
장학금	희망장학금	장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준에 부합한 자	장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		직전학기 3.0이상
	장학사정관 장학금	급격한 가계사정곤란자로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준에 부합한 자	장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		위원회 의결에 따름
	복학생면학 장학금	등록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한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	200,000원		해당사항 없음
	근로장학금	대학본부, 부속·부설기관, 학과사무실들에서 행정보조한 자	대학본부 : 50만원 / 월 부속·부설기관 : 40만원 / 월 학과사무실 : 45만원 / 월	_	해당사항 없음
		대학본부, 부속·부설기관, 학과사무실들에서 교원이나 행정직원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	총장이 정한바에 의거하여 근로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		해당사항 없음
	공로장학금	학생자치회 및 언론사 임원	수업료 기준 지급 [1급(80%), 2급(50%)3급(30%), 4급(15%)		직전학기 3.0이상
	프로그램참여 우수장학금	대학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상된 장학금	프로그램 주관 부서에서 지급하는 금액		해당사항 없음
	기숙사 봉사장학금	기숙사 (부)사감으로 한 학기를 봉사한 학생	한 학기당 60만원		해당사항없음

※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- ※ 성적우수장학금 처리기준
 - ①평점평균 ②실점평균 ③이수학점 ④총평점 ⑤총실점 ⑥총이수학점 ⑦소득분위 순
 - 학과별 성적순으로 배정하여 인원과 급수는 별첨 내용에 의함
- 성적장학생은 성적순으로 대상자가 확정 처리하며, 결원이 생기더라도 성적 차순위에게 이월되지 않는다.